

## 01 열려라 중국

-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의견수렴안 발표 (경영동 중국변호사)

## 05 Vietnam LIVE!

- 상업은행의 대출 비율에 관한 규제 소개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 08 ¡Hola! 중남미

-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시의 자본금 승급 (정철 변호사)

## 11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캄보디아)] 올해 말 개장...국영기업 3개 상장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유정훈 변호사 · 캄보디아 사무소장)
- [Global 트렌드(브라질)] M&A 시장 급성장...브라질 진출 기회(정철 변호사)
- [Global 트렌드(베트남)] 커피 고무 철강 거래...투자 다변화 '기회' (김도요 변호사)
- [Global 트렌드(중국)] 저소득층 주택 공급...다주택자 세금 부과(최정식 변호사 · 상해 사무소장)

## 14 주목! 이 판례

-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자의 범위(민법 제35조 제1항)(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 15438)

## 17 최신법령

-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등
-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의 확대 등

## 19 업무동향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중국 다롄시의 '포스코IT 센터' 조성을 위한 1억 불 PF 자금 조달 업무 수행

## 20 지평지성 단신

-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 강성 대표변호사, 세계변호사협회(IBA), 대한변호사협회(KBA) 공동 주최의 '경쟁법 회의(Competition Law Conference)' 에서 '최근 KFTC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Trend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 발표 외
- 김성수 변호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 임성택 변호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주최의 워크숍에서 '무선인터넷콘텐츠와 자율규제(그 현황과 스마트모바일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발표
- 명한석 변호사, (사)해외자원개발협회 주관 '자원 에너지 법제연구회' 간담회' 참석
- 이행규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 주관 '사내변호사 아카데미'에서 '자본시장법개요' 강의
- 이소영 변호사, 이페이퍼포럼 주최의 'e페이퍼 비즈니스 · 마켓 컨퍼런스 2011'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 발표
- 정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의 제90기 에너지법 특별연수에서 '한국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와 정책' 강의
- 이광선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동법 기본과정'에서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본이론 및 쟁점 사항 연구' 강의

## 25 영입인사

- 조원준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열려라 중국)

##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의견수렴안 발표



경영동 중국변호사

### 1. 사안배경

2011년 4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07년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으며,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0년 4월 6일에 반포한 <외국자본을 더한층 잘 이용할 것에 관한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외국자본 활용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었는지, 개방 정도는 어떠한 지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지침서로서 1995년 처음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되었으며, 이후 4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는 2007년 12월 1일자 수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안이 당시 경제과열과 통화팽창의 방지에 그 목적을 두었다면 2011년 수정안의견수렴안은 국제금융위기의 극복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필요성과 그 긴박성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 주요 수정내용

200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비교하여 2011년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이 몇 분야에서 중요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 (1) 투자장려형 분야

첫째, "농림목어업" 분야에서는 주로 녹색, 유기농 야채의 재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과 동시에 중저산출 농촌토질개선과 찾오피무공해재배기술 및 유전자변형나무새품종육성에 대한 장려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광산채굴업" 분야에서는 석유탐사기술의 개발과 응용 및 유엽암(油頁岩; oil shale), 중유 등 비정상석유자원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방식을 "합작"에서 "합자 및 합작"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엽암가스(頁岩氣; shale gas), 해저천연가스수합물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투자장려형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제조업" 분야에서는 담배산업과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내용을 삭제하고 보완하였는 바, 주된 취지는 환경 및 건강보호와 그린에너지활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산업 분야에서 "제지법연초박편생산 및 담배필터생산"에 대한 투자장려를 삭제하였으며, 자동차제조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제조(외자지분비율50%미만) 및 자동차R&D건설"에 대한 투자장려를 삭제하고 대신 "신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외자지분율 50% 미만) 생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분야"에서는 현행 규정 외에 추가로 "재생수 공장 건설과 운영" 및 "자동차충전소, 배터리교환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장려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매와 소매업"분야에서는 현행규정 상의 물류산업을 더욱 세분하였는 바, "일반상품의 공동배송, 신선한 농산품의 저온배송"에 대한 물류 및 그와 관련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농촌프랜차이즈배송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여섯째, "임대업과 상업서비스업"분야에서는 창업투자기업 및 지재권서비스 등 두 가지 분야를 투자장려형에 추가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분야에서는 직업기술능력양성을 투자장려형에 추가하였습니다.

## (2) 제한형 투자산업분야

제한형 투자산업분야에서 삭제한 내용은 주로 ① 탄산음료생산; ② 페타이어재생산 및 저성능공업 고무부품생산; ③ 콘테이너생산; ④ 세금공제금전출납기(税控收款机; 중국세법에 따른 세금 등이 표시되는 금전출납기)제조; ⑤ 기초전산업무 중 국내업무 및 국제업무에 대한 제한; ⑥ 특허경영, 위탁경영, 상업관리회사 등 상업회사; ⑦ 상품경매; ⑧ 금융임대회사; ⑨ 대도시 도시가스, 열공급 및 공배수관망의 건설과 경영, 그리고 ⑩ 의료기관(합자 및 합작)에 대한 투자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별장건설과 경영에 대하여서는 "투자제한형"에서 "투자금지형"으로 그 강도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 밖에 음반제품의 배포와 관련하여 중국측 지분통제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한형 투자산업분야에서 추가한 내용은 주로 광산자원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과 농산품 가공종류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일부 생산능력 한도제고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땅콩 및 면화씨 등 각종 식용유지가공산업을 투자제한분야에 추가하였습니다.

## (3) 금지형 투자산업분야

금지형 투자산업분야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우편물의 국내특송서비스업무와 별장의 건설과 경영을 추가로 금지하였고, 반면 인터넷문화경영분야에서는 음악의 인터넷서비스를 금지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3.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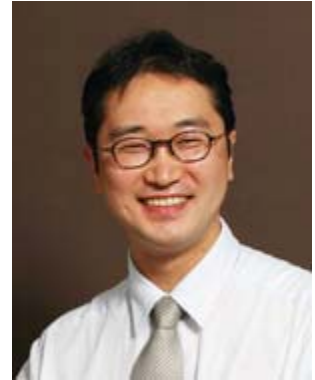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대한 수정내용으로부터 지식경제발전,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민생복지 향상을 미래중국경제의 근간으로 하려는 중국정부의 야심찬 경제발전방침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WTO가입약정서에 따른 특정서비스 산업의 유예기간의 만료,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의무이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압력과 국민 의료산업 육성,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통제 등 국내적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 국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정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방침이 결정될 것이지만, 사회일반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으려 하는 중국정부의 개혁적인 조치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Vietnam LIVE!)

## 상업은행의 대출 비율에 관한 규제 소개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 1.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11년 들어 상업은행의 대출 비율을 규제하는 일련의 정책을 입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① 인플레이션 억제, ② 거시경제의 안정화, ③ 사회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2011년 2월 24일자 정부의 Resolution No. 11/NQ-CP
- 2011년 3월 1일자 중앙은행 총재의 Directive No. 01/CT-NHNN
- 2011년 4월 14일자 중앙은행 총재의 Document No.2956/NHNN-CSTT

Resolution 11은 상업은행의 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 외에도, 통화증가율을 15~16%로 유지하고, 공공투자 지출을 10% 감축하며, 재정적자를 GDP의 5% 이하로 줄이는 등 거시경제의 지표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도 제약받게 될 것입니다.

## 2. 규제 내용

상업은행 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업은행은 2011년도 대출 증가율(credit growth rate)을 2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loans, lending, discounting, leasing, factoring, guaranteeing 기타 여신 활동이 포함됩니다.

둘째, 전체 대출 중 비생산적인 분야("non-productive sector")를 위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1년 6월 30일까지 22% 이하, 2011년 12월 31일까지 16%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분야 대출"에는 유가증권 할인, 부동산 투자, 개인 등을 위한 대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율을 일반적인 수준의 2배로 적용되고,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도 영업 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제 대상은 베트남 내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계 금융기관과 지점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 3. 규제의 파장

베트남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다 국영기업의 방만한 운영 및 무분별한 투자(자회사 설립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분야의 산업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개발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위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개별 사안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부동산사업 외에 다른 생산적인 영업 활동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도 규제를 받게 되는지, (ii) 시공사의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사이행보증서의 발급과 같이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실질적으로 대출로 보기 어려운 행위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같이 적용 대상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부동산사업과 관련된 분야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베트남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에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고려한다면 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Jipyong & Jisung](#)



(¡Hola! 중남미)

##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시의 자본금 송금



정철 변호사

지난 호까지는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진출과 관련하여 설립방식과 각 설립유형의 특성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형식적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로 자본금을 브라질로 송금하는 절차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브라질 : 별도의 인허가 절차는 없어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권 국가들이 외국인의 자본 투자에 관하여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설정해 두어 규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브라질은 외국인의 자본 투자에 관하여 정부의 인허가 관점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라질이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단 브라질에 설립된 법인을 외국인투자회사가 아닌 브라질 내국법인으로 본다는 점은 종전에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본금 송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환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외환송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자본금 송금에 관한 최소한의 등록 절차는 필요합니다.

### 2. 브라질 중앙은행에 대한 온라인상의 등록절차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브라질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브라질 중앙은행에 관련 법(Law No. 4,131/1962, Law No. 11,371/2006)이 정한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등록은 세금이나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브라질 내로 자금이 유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송금에 대한 등록 절차는 중앙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에 투자자가 직접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는 SISBACEN (Sistema de Informações do Banco Central / Central Bank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는 SISBACEN에 직접 접속하여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SISBACEN 내에는 외국인 직접투자(IED : Investimento Estrangeiro Direto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위한 별도의 전자등록 모듈(RDE : Registro Declaratório Eletrônico / Electronic Declaration Registry)이 마련되어 있어, 이 모듈을 통해 SISBACEN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통상 투자의 대상이 되는 현지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자본금 송금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SISBACEN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기존 등록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 사용자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설된 현지법인에 관한 정보(CADEMP : Cadastro de Empresas)를 시스템상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법인은 CADEMP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RED-IED 번호도 부여받게 됩니다.

자본금 등록의 절차는 2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현지법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출자약정을 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약정에 대하여 출자를 받게 되는 브라질 현지법인은 이러한 출자약정의 내용을 해당 출자약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ISBACEN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출자약정에 따라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납입 후 30일 이내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중앙은행 등록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신설법인의 자본금 출자약정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약정의 날짜, 출자약정 가액, 주식수, 법인의 순가치에 관한 정보, 거주자/비거주자별 출자약정 금액, 각 비거주자별 출자약정 금액, 보통주/우선주의 내용(주식회사 경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록을 위해서는 RDE-IED 번호, 출자약정 결정일, 납입 금액, 납입된 비거주자 주식 수(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우선주 구분), 납입일, 투자유형(단독/합작)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면 향후 해당 자본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국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회사 설립에 이어 자본금 납입까지 이루어짐으로써 브라질 내의 현지법인이 바야흐로 법적인 실체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브라질 현지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ipyong & Jisung](#)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802 | 2011. 4. 20.



[Global 트렌드]

캄보디아 증권 거래소

### 올해 말 개장...국영기업 3개 상장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나라다. 우리는 폴 포트 공산 정권이 잔혹하게 학살을 저지른 나라로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캄보디아는 현재 입헌군주제를 정치체도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경제체도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지난 5년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10.3%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캄보디아에 증권거래소가 생긴다. 한국거래소가 지분 참여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는...

유정훈 변호사

yoojh@jipyong.com

[PDF](#) [e-Link](#)



**정철 변호사**  
cjeong@jipyong.com

[Global 트렌드]  
브라질 기업 M&A

### M&A 시장 급성장...브라질 진출 기회

브라질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기업 형태의 소규모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 특정한 영역에 집중하면서 규모를 키우지 않고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역사를 가진 회사들이다. 그러다 보니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을 확장하거나 변모시키는 일에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들이 가업을 잇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M&A를 희망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 브라질의 M&A 시장은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연평균 384건을...

[PDF](#) [e-Link](#)



**김도요 변호사**  
dykim@jipyong.com

[Global 트렌드]  
베트남 상품거래소 오픈

### 커피 고무 철강 거래...투자 다변화 '기회'

올 1월 11일 베트남 호찌민시에 베트남 최초의 현대적 상품거래소인 베트남상품거래주식회사(Vietnam Commodity Trading Joint Stock Company)가 설립됐다. 베트남 정부가 2월 11일 동화 가치를 달러당 9.3% 평가절하(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동화 평가절하는 3%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및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품거래소가 문을 연 것은 의아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PDF](#) [e-Link](#)



[Global 트렌드]

중국 부동산 정책

### 저소득층 주택 공급...다주택자 세금 부과

최정식 변호사  
jschoi@jipyong.com

대출이 없는 집, 상하이 번호판을 단 차(有房無貸 有車無牌)! 상하이의 젊은 여성이 내세우는 배우자 의 조건이다. 은행 대출 한도가 집값의 80%여서 대출을 낀 집은 매력이 없다. 중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사서 다는데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 상하이 번호판을 단 차를 몰아야 부유한 티가 난다. 아쉽게도 이런 조건의 배우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상하이 집값은 서울의 집값과 맞먹는다. 도심의 아파트는...

[PDF](#) [e-Link](#)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홈페이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PDF) [Jipyong & Jisung](#)

(주목! 이 판례)

##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자의 범위 (민법 제35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분양대금반환】

### 1. 판결의 취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 2. 사실관계

A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A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자금을 확보한 다음 추가 부지를 매입한 후 위와 같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해주시기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자 A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실질적 대표자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도 원고들이 입은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3. 판결의 요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4. 판결의 의의

원심과 대법원 모두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가 피고 주택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이었다고 하더라도 A가 피고 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A의 행위에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 피고 주택조합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B가 조합 설립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A에게 일임하여 A가 피고 주택조합의 도장, B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서 조합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한 점, B는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B가 A의 사무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일절 대표자로서의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A는 대외적으로 조합장으로 불렸고 대내적으로 사장으로 불리는 등 조합원들이나 이 사건 각 조합의 거래 상대방들도 A를 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점, A가 B의 관여 없이 피고 주택조합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는 피고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대표자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민법상 법인,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비법인사단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Jipyong & Jisung]

(최신법령)

## 1.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등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시행)

1.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2.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이나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제11조 제2항).
3.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3조).
4.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80조).
5.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6. 다운로드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시행)

## 2.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616호, 2011. 10. 29. 시행)

1. 법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2.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로 확대하였습니다(제15조).
3. 환경관련 법률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고,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자격·임면·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의2).
4. 다운로드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616호, 2011. 10. 29. 시행)

##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의 확대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6. 10. 시행)

1.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전국 1,887개소)으로 한정되어 있던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원·의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5조, 제53조).
2. 자동차운전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축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제외)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별표5).
3. 다운로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6. 10. 시행)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중국 다롄시의 '포스코IT센터' 조성을 위한 1억 불 PF 자금 조달 업무 수행

지평지성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22일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서 개최한 '포스코IT센터' 기공식과 관련하여, '포스코IT센터' 사업에 필요한 1억 불 가량의 PF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포스코IT센터는 주거·사무 복합단지로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다롄시 첨단기술개발구인 '가오신(高信)구' 내 루밍(路明) 부지에 조성되며, 면적 46,943m<sup>2</sup> 규모로 아파트 7개 동, 사무용 건물 1개 동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 [관련기사]

- 서울경제 - 中 다롄 '포스코 IT센터' 기공(종합)(2011. 4. 22.)
- 한국경제 - 포스코건설, 中 부동산 개발 첫 삽(2011. 4. 22.)
- 파이낸셜뉴스 - 포스코건설, 중국서 '포스코IT센터' 준공(2011. 4. 22.)

### [담당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임주영 호주변호사   상해 사무소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단신)

##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4월 16일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에서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기업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함으로써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번 행사에 2,452점의 물품을 기증하고 행사 당일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물품 판매를 도왔습니다. 야외 이벤트로 와플과 화분도 판매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의 정기수익 배분 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야외 이벤트 미니화분을 기부해주신 어울림플라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관련기사]

- 아름다운가게 <http://www.beautifulstore.org>

### [관련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2011. 4. 16.)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강성 대표변호사, 세계변호사협회(IBA), 대한변호사협회(KBA) 공동 주최의 '경쟁법 회의(Competition Law Conference)'에서 '최근 KFTC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Trend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 발표 외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28일, 세계변호사협회(IBA)와 대한변호사협회(KB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쟁법 회의(Competition Law Conference)'에서 아시아 지역의 합병규제(Merger Control in Asia Pacific Region) 세션의 패널로 참석해 '최근 KFTC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Trend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 연합뉴스 - 변협, 세계변협과 경쟁법 회의 개최(2011. 4. 28.)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연수교육 과정에서 'M&A 실무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 김성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4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판결문의 송달과 항소기간 확인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는 5월 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의 민사사건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소송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제안하고 제도발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직한 기관으로 윤종수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성수 변호사를 비롯한 18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임성택 변호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주최의 워크숍에서 '무선인터넷 콘텐츠와 자율규제(그 현황과 스마트모바일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제주도)에 참석하여 '무선인터넷콘텐츠와 자율규제(그 현황과 스마트모바일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방향)'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 명한석 변호사, (사)해외자원개발협회 주관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간담회'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는 5월 12일, (사)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는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2011년도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연구계획 발표'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명한석 변호사는 현재 2011년「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이행규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 주관 '사내변호사 아카데미'에서 '자본시장법개요'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5월 6일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의 '사내변호사 아카데미'에서 '자본시장법개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내변호사의 처우개선과 역할확대를 목표로 한국사내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는 사내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전문강좌 아카데미를 개설해 지난 달 7일부터 첫 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 법률신문 -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 공동의장 백승재 변호사(2011. 4. 7.) [Jipyong & Jisung](#)

## 이소영 변호사, 이페이퍼포럼 주최의 'e페이퍼 비즈·마켓 컨퍼런스 2011'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4월 28일 이페이퍼포럼이 주최하는 'e페이퍼 비즈·마켓 컨퍼런스 2011'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책 산업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번 포럼은 이론적인 이해나 기술 소개보다 실제 전자책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사례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기사]

- 뉴시스 - 전자책 '핫이슈' 한자리에..."이페이퍼포럼 컨퍼런스 개최"(2011. 4. 11.)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정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의 제90기 에너지법 특별연수에서 '한국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와 정책'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는 지난 4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제90기 에너지법 특별연수에 참석하여 '한국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와 정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 이광선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동법 기본과정'에서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본이론 및 쟁점사항 연구'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광선 변호사)

지평지성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인사·노무·총무 및 관계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노동법 기본과정'에서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본이론 및 쟁점사항 연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조원준 미국변호사  
wjcho@jipyong.com

## □ 학력사항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B.S. in Biochemistry
- 미국, University of New Hampshire, Franklin Pierce Law Center, J.D.

## □ 경력사항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2007년)
- 법무법인 에버그린 미국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국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하노이 사무소 근무

## □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근무하게 된 조원준 미국변호사입니다.

첫 출근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주어지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JIPYONG & JISUNG

<http://www.jipyong.com>

## 법무법인 지평지성

###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 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 순천 분사무소

(540-330) 전남 순천시 왕지동 870-1 금강타워 3층 Tel : 061)724-2001 Fax : 061)725-7604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 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2301-9820 Fax : 856-21-264-344